

2019년도 서울특별시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 공고

「2019년도 서울특별시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결과」
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4월 1일

서울에너지공사 사장

[보급사업 개요]

1. 지원대상: 서울시 소재 주택·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자
2. 신청기간: 공고일 ~ '19. 11. 30.(선착순 접수, 예산소진 시 종료)
3. 지원기준

구 분		지원단가	비고
주택형	일반(1kW~3kW)	600천원/kW	○ 총 사업비 상한제: 560만원 ○ '19년도 자치구별 추가 지원
건물형	일반(3kW 이상)	600천원/kW	
	서울시와 단체설치 협약 체결시	700천원/kW	

- 총사업비 상한제 적용(주택형만 해당)
 - 2kW 이하: 4,600천원, 3kW 이하: 5,600천원,
- 주택형(1kW 이상 ~ 3kW 이하): 600천원/kW 지원
 - 단독주택 외 민간 어린이집(유치원) 등 보육시설, 경로당(민간), 공동주택 관리동 1kW ~ 3kW 설치시에도 주택형 일반 보조금 지원
 -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,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함(동일지분인 경우 동의서 제출)
 - 신축주택의 경우 접수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함

-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함

○ 건물형(3kW 이상) : 600천원/kW 지원

-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, 건물이 공동소유일 경우 모든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함
- 단, 국가·지자체가 소유·관리하는 건물, 법령에서 정해진 설치의무화, 영향평가, 발전사업은 제외
- 공동주택 옥상설치(공용전기 사용) 대여사업 지원
- 서울시와 단체설치 협약 체결시 지원금 상향(700천원/kW)

[선정 기준]

- 2019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, 건물 지원사업(태양광 분야)에 선정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
 -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
 - 5년간 무상하자보수,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,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업체

[선정 결과]

- 우리 시 선정기준에 적합한 26개 보급업체를 참여시공업체로 선정
(※ 연번은 신청 접수순임)

1	청호나이스(주) (02-2257-5600)	2	대성히트펌프(주) (02-2003-2399)
3	(주)온누리태양에너지 (031-946-6333)	4	(주)하나기연 (02-562-3894)
5	(주)현대에코솔라 (031-487-3000)	6	(주)유니테크 (1588-7882)
7	(주)광명전기 (02-2240-8412)	8	(주)파랑이엔지 (02-948-0900)
9	(주)만양 (031-879-9674)	10	이앤에이치(주) (02-323-3385)
11	(주)넥스트에너지코리아 (031-764-5616)	12	(주)라인이엔지 (02-2088-8302)
13	(주)한진솔라 (02-941-1455)	14	녹색드림협동조합 (02-2039-7898)
15	(주)현대에스더블유디산업 (031-413-1011)	16	영동테크원(주) (02-856-9004)
17	(주)케이이에스전기공사 (02-529-4616)	18	(주)무한에너지 (031-548-0536)
19	(주)에타솔라 (02-2668-8501)	20	(주)피애피 (054-276-0005)
21	(주)용화전기통신 (031-383-4573)	22	우일정보기술(주) (02-922-1212)
23	(주)신보 (02-710-0936)	24	(주)세아네트웍스 (02-6970-1611)
25	(주)평산전력기술 (1600-9652)	26	(주)한빛파워 (02-2117-0151)

[의무 사항]

- 보급업체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기준과 서울시 건축물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가이드라인【서울시공고 제2016-2471(2016.12.29.)】을 준수하여야 함
- 준수사항 및 시공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, 환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, 서울시에서 주기적으로 보급 현황을 평가하여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기업에 배제될 수 있음
- 보급업체는 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 간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고,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수리비용은 소유자가 부담
 - 주택형 및 건물형(일반)은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(5년) 후 서울에너지공사 및 소유자에게 제공
- 설치한 태양광 설비에 대하여 향후 5년 동안 연1회 이상 서울시 또는 서울에너지공사가 정한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함
- 보급업체는 용량, 보급업체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 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함 (별지 서식 참고)
- 표준설치계약서 허위도장 날인, 제출서류 위·변조, 이면계약서 작성, 명의대여 등 허위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와 사전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후 사후신청 등의 사업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참여제한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

[기타 사항]

- 사업공고(사업승인) 이후 설치한 설비에 한하여 지원함
- 정부 신재생에너지보급(주택, 건물지원)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
- 서울시 재원확보 계획에 의하여 지원시기와 규모,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
-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제출한 정보는 신청자(시민)에게 공개될 예정임
-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, 사업자와 신청자는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함
- 보급업체는 서울시, 서울에너지공사 및 자치구가 제시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

서류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하여야 함

- 보급업체는 연 1회 실시하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, 부실하다고 판단되거나 미실시 업체는 향후 보급업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에너지공사(☎ 2640-5311,5316),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(☎ 2133-3568), 자치구 에너지 담당부서에 문의 바람

붙임 별지 서식(제1,2호) 1부. 끝.